

CR 2010 - 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2010. 9

김대환 · 이기형

CR 2010 - 04

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2010. 9

김대환 · 이기형

보 험 연 구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발생현황	2
1. 적발현황	2
2.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전망	4
III.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심사제도의 문제점	7
1. 충분한 보험금 지급심사곤란	7
2. 학습효과 및 민원제기를 통한 보험사기 유발 가능	10
3. 보험료 원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	11
IV. 주요국의 보험금 지급기한제도	13
V.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20
1. 보험금지급기간의 합리화	20
2. 장기손해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적발시스템 개선	22
<참고문헌>	24

I. 검토배경

- 2009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각각 34.6%, 51.36%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살인을 감행하거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음.
 - 보험사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과거 3년 동안 증가하지 않은 반면,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손해보험의 총 원수보험료 중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험사기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를 충분히 심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 보험금지급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험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일반 보험계약자의 간접적 피해를 야기함.
 -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보험사기가 더욱 치밀해지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사기 현황 및 관련 법적 제도를 살펴보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발생현황

1. 적발현황

- 2009년 보험사기의 적발금액은 3,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하였으며,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면, 장기손해보험은 과거 3년 동안 339.4%나 증가함.
- 200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은 2,829억원으로 손생보 전체의 85.6%를 점유하였으며, 생명보험은 476억원으로 14.4%를 차지
- 2006년 128억원이었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9년 433억원으로까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험사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2006년 69.6%에서 2009년 67.7%로 감소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12.6%에서 13.1%로 증가함.

<표 1>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보험종목		'06년	'07년	'08년	'09년
		적발금액	적발금액	적발금액	적발금액
생명 보험 분야	교육보험	5,992	6,231	1,993	171
	연금보험	1,216	103	2,581	1,910
	보장성보험	29,444	30,990	32,157	45,483
	양로보험	2,565	2,010	222	16
	소계	39,217	39,333	36,953	47,580
손해 보험 분야	자동차보험	123,897	135,882	177,912	223,650
	장기손해보험	12,765	23,263	32,180	43,324
	화재보험	280	2,280	4,297	10,159
	상해보험	135	2,387	2,995	5,322
	특종(여행자)보험	1,788	1,379	496	400
	기 타	-	-	40	20
	소 계	138,865	165,191	217,920	282,875
합 계		178,082	204,524	254,872	330,455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10.3.16

□ 2009년 보험사기의 적발인원은 54,269명으로 전년 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장기손해보험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51,629명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하면서 총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95.1%에 이름.

○ 자동차보험은 과거 3년동안 205.5% 그리고 과거 1년동안 129.3% 증가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각각 327.9%, 151.4%증가하였음.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은 2006년 5.4%에서 2009년 8.7%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2>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현황

(단위: 명, %)

보험종목		'06년	'07년	'08년	'09년
		관련자	관련자	관련자	관련자
생명 보험 분야	교육보험	229	398	104	9
	연금보험	24	44	41	115
	보장성보험	2,089	1,742	1,527	2,512
	양로보험	228	127	25	3
	소계	2,570	2,311	1,697	2,639
손해 보험 분야	자동차보험	22,565	24,825	35,852	46,370
	장기손해보험	1,440	3,387	3,119	4,721
	화재보험	6	18	21	83
	상해보험	22	238	285	414
	특종(여행자)보험	151	143	43	34
	기타	-	-	2	7
	소계	24,184	28,611	39,322	51,629
합 계		26,754	30,922	41,019	54,268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10.3.16

2.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전망

□ 손해보험의 총 원수보험료 중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험사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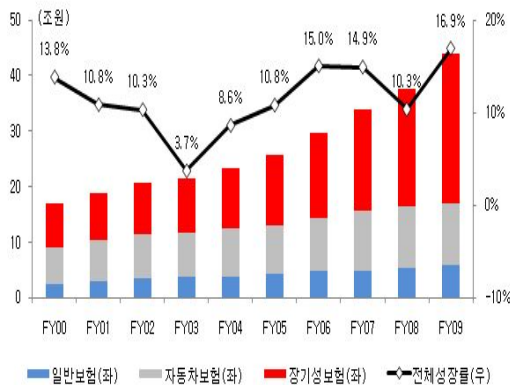
○ FY2009 장기성보험¹⁾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6.4% 성장하여 FY2000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1) 장기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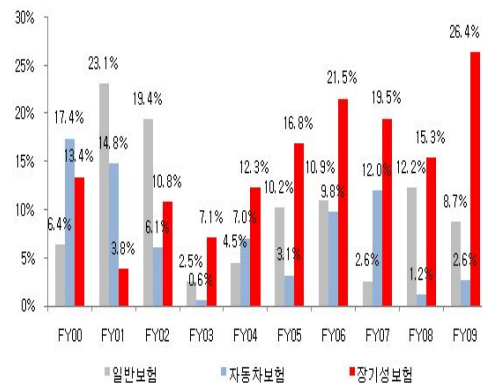
○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각각 2.6%, 8.7%에 머물러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장기손해보험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자동차보험시장보다 크고 성장률도 높아 이와 관련된 보험사기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그림 2> 보험종목별 성장률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전반적인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자동차보험보다는 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의 적발금액과 적발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사기 피해액과 혐의자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보험사기가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함.

－ 2009년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무직·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큰 폭(136.8%)으로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

화한 이유이기도 함.

- 2009년 금감원·경찰청간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는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설치·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이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기도 함.
 - 자동차보험은 보험종목 중 계약 및 사고관련 통계가 가장 발달하여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위한 Scoring System등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
 - 보험종목별 실제 보험사기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많을 수 있음.
 - 실제로 업계의 보험조사팀(SIU)조직이 자동차보험사기조사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손해보험사기와 관련한 조사기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자동차보험보다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손해보험은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보험의 목적물과 관련한 정액급부와 실손급부를 담보하는 상품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 계약자들의 역선택이나 보험사기 가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사기성보험금 청구는 보험약관상에 규정된 획일화되고 매우 짧은 보험금 지급기한제도와 사기범들이 이를 적절히 악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민원평가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Ⅲ.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심사제도의 문제점

1. 충분한 보험금 지급심사곤란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방법별로 구분해 볼 경우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보험금심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만큼, 철저한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중요함.

○ 보험조사 전담조직이 적발한 조사적발은 12,431명(722억원)이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현장적발은 41,837(2,581억원)명에 달함.²⁾

－ 조사적발은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입건한 경우이며, 현장적발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조사 과정에서 혐의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 반납한 경우를 뜻함.

<표 3> 보험사기 현장적발 비율

구 분	조사적발	현장적발(a)	합계(b)	현장적발 비율(a/b*100)
적발인원(명)	12,431	41,837	54,268	77.1
적발액(억원)	722	2,581	3,303	78.1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10.3.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 심사기간이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음.

○ 보험금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보험약관은 보다 세부적으로 보험금지급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10.3.16

- 상법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의 제658조(보험금지급)는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4> 상법의 보험금지급시기 관련조항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회사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한편 장기손해보험(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 또한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주도록 함.

<표 5> 제3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지급시기 관련 조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	--

	지급예정일을 피보험회사(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회사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회사(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회사(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 보험금지급시기는 피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관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첫째, 약관에서 명시한 보험금지급시기 3영업일은 실무에서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제출한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가 판단에 필요한 정당한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보험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지급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여 여론으로 압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³⁾.

○ 둘째, 만일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

3)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의안 제2009-74호 (2009.7.21)

로 밝혀질 때 기지급한 50%의 기지급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임.

－ 또한 기지급금에 대한 회수여부가 불확실하고 적지 않은 소송 비용을 초래하게 됨.

○ 이렇게 보험금지급시기가 비현실적일 경우 보험회사가 필요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사기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짐.

－ 특히 오늘날 사회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험사고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필요하고,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치밀한 범죄수준의 보험금부정청구사태가 빈번하여 보험회사로서도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⁴⁾

2. 학습효과 및 민원제기를 통한 보험사기 유발 가능

□ 보험금지급기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학습효과로 인해 보험사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적인 민원제기⁵⁾를 통해 보험금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가능성도 존재함.

□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금심사제도가 엄격하지 않고 보험사기를 유발해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

○ 보험금청구 유경험자의 경우 무경험자보다 보험사기 발각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금심사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험금청구를 경험한 보험계약자일수록 보험금심사제도가 엄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 보험금청구 경험자들이 보험금지급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인식

4) 장덕조, “사기적 보험청구-상법 보험편개정안 비판”, 「인권과 정의」 Vol. 386(2008)

5)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부문(15점)에서 민원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이 강할 경우 보험금청구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로 인해 오히려 보험사기가 증가될 수 있음.

<표 6> 보험금 청구 경험의 유무에 따른 보험금지급심사에 대한 의견

구 분	항상·대부분 발각됨	보험금지급심사가 까다로움
보험금 청구 경험자	42.1%	58.6%
보험금 청구 무경험자	48.4%	65.9%

주 : 803명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한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설문조사에 기반함(2009. 10월, 보험연구원).

☐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및 언더라이팅 담당자, 보험사기 업무조사자는 민원평가제도가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의 주담보인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유발가능성과 실제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7> 민원평가제도의 보험사기유발 가능성

구 분	장기건강보험	사망보험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유발가능성	80.8(2)	80.6(3)	81.8(3)	81.4(1)
실제유발요인	70.2(1)	71.2(2)	75.4(1)	71.6(1)

주 : 지표는 5점 척도로 답한 것을 100점으로 환산한 것임. ()의 수치는 수개의 답변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순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사기 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 2007.11

3. 보험료 원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

☐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에 대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

경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귀결됨.

○ 보험사기에 직접 연루된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험사기로 인해 본인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함.

－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⁶⁾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53.9%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인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보험계약은 동질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각출하여 약정한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리임.

○ 따라서 동질위험을 훼손하는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그 피해규모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짐.

□ 결국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보험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금지급시기를 너무 짧게 규정한 나머지 보험사기 및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간접적 피해를 야기함.

6) 전국(제주 제외) 성인남녀 1,200명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IV. 주요국의 보험금 지급기한제도

1.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기는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약관에서 규정한 상태로 운영되어 오다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보험법에서 “보험금부의 이행기”라는 조문으로 손해보험(제21조), 생명보험(제52조, 상해질병정액보험(제81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⁷⁾.
- 제1항은 보험금부를 이행할 기한을 약정한 경우일지라도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 이행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 보험금 지급기한이 보험사고, 담보손해액, 보험회사가 면책할 사유, 기타 보험금부 이행을 위하여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당해 기간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금부를 행하는 기한으로 함.
- 제2항은 보험금부를 이행하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접수한 후, 당해 청구에 관계된 보험사고 및 담보손해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경과할 때 까지는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제3항은 제2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부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7) 福田称夫,古笛恵子,『逐條解説 改正保険法』, 2008.9

- 일본 보험회사들은 보험법의 시행 내용이 과거계약에도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시기와 관련한 사항을 보험약관에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 보험법시행전에 비해 보험금 지급기일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생명보험은 영업일 5일 이내, 손해보험은 30일로 제한⁸⁾하는 것은 동일함.
 - 하지만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조사사유와 각 조사사유에 대한 조사기간을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들의 조사사유와 조사기간은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일본 ING생명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여부, 면책사유 해당가능성,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약관상 영업일 5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

8)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상에 보험금지급기한을 명시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의 5일과 손해보험의 30일은 보편적인 기한임.

<표 8> 일본 ING생명의 보험금 지급기한 운영현황

조사 확인 사항	지급기한 연장 내역	
	지급기한 연장 사유	지급기한
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0일
②면책사유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의사의 조회를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60일
③고지위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약관 등에 정한 무효, 중대사유, 사기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법령에 기초한 조회를 하는 경우	120일

주 : 닛세이생명의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사유별 지급기한의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180일로 운영

- 일본후지카사이(富士)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유무와 면책사항, 보험금산출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약관상 지급기한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표 9> 일본 후지카사이손보의 보험금 지급기한 운영현황

조사 확인 사항	지급기한 연장 내역	
	지급기한 연장 사유	지급기한
①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 검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수사, 조사결과 조회	180일
②면책사유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검사기관 등 전문기관의 진단, 감정결과 조회	90일
③보험금산출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해정도, 사고와 생해의 관계, 치료 경과 등)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재해의 피해지역 조사	60일
④계약효력 유무, 사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 전문기관의 심사결과 조회	120일
	국내에서 대체적 수단이 없는 경우 국외 조사	180일

자료 : 일본 후지카사이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http://www.fujikasai.co.jp/announce/medical.shtml>)

2. 미국

- 미국의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규제는 일반적인 법리인 “신의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 신의성실의무 원칙은 보험회사의 행위가 피보험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한 경우, 공정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익의 균형이 보험회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상실된 경우에 적용됨.
 - 이러한 신의성실의무⁹⁾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 손해액 이상의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해야 하며,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손해처리행위방지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이 운용되고 있음.
- 또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고접수사실 통보제도와 보험금지급 기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9) 2010년 7월 현재 신의성실의무 위반시 징벌금부과를 채택하지 않은 주는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오크하이오 등 4개 주임.

<표 10> 미국의 주별 보험금 지급기한 운영현황

주별	보험종목	사고접수 사실 통지기한	보험금 지급기한	신의성실 위반 배상금
뉴욕	자동차보험	접수후 30일	접수 후 30일	있음
	건강보험	접수후 30일	접수 후 45일	
	기타 보험	접수후 15영업일	인정 후 5일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	접수 후 30일	있음
	기타보험	-	-	
뉴저지	자동차자손	-	접수 후 60일	없음
	당사자보험	접수후 10영업일	접수후 30일	
	제3자보험	-	접수후 45일	
	자동차대인	-	접수후 90일	
	건강보험	-	접수후 60일	
	생명보험	-	사망: 사후 60일 기타 : 30일	
아칸소	전종목	접수후 10영업일	-	한도제한
오하이오	손해보험	-	인정 후 10일	없음
	건강보험	-	접수 후 24일	
	기타보험 (생보제외)	접수후 10영업일	인정후 5일	
바몬드	전종목	접수후 10영업일	접수 후 30일	있음

주 : 1) 사고접수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주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28개주임.

2) 보험금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주는 아칸소,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14개주임.

자료 : 損害保險總合研究所, 『歐美損害保險會社における損害調査實務の現状分析』, 2008.9, p.260
및 <http://www.badfaithinsurance.org/statelaws.html> 참조

○ 보험사고 접수통지기한은 최저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보험금지급기한은 최저 5일에서 최대 90일로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명확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를 처벌할 수 있으며, 소송의 제기도 가능함.

3. 유럽

□ 영국은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협회인 ABI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나, 2001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이 제정되면서 금융청이 2005년 1월에 제정한 보험업무행위규준(ICOB: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의 제7장에 손해조사가 규정되었음.¹⁰⁾

－ 손해조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지급기한에 대해 개인계약만 사고접수 후 5영업일 이내로 되어 있음.

○ 2008년 1월에 개정된 ICOBS(ICOBS : New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의하면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손해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과 자동차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책임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이 명확하게 견적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합리적인 보상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손해액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이유를 회답해야 함.

－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영란은행의 공정금리에 4% 가산한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함.

□ 독일의 경우 보험금부의 이행시기는 국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공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계약법 제14조(보험금부의 이행기)¹¹⁾에 규정하고 있음.

10) 損害保険総合研究所, 『歐美損害保険會社における損害調査實務の現状分析』, 2008.9, pp. 28-29

11) 新井修司, 金岡京子, ドイツ保険契約法(2008年 1月1日 施行), 2008.8, p.12

- 보험회사의 지급시기는 보험사고나 보험회사의 급부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조사가 종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사고의 통지가 1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확인조사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지연이자 지불의무 면제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로 규정
- 프랑스의 자동차대인사고의 보험금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의해 제시된 보상금액에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 성립 이후 4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지체에 대해 법정이자율의 50%를 가산해주어야 하며, 2개월 초과지체는 법정이자율의 2배를 더 지급해주어야 함.

V.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1. 보험금지급기간의 합리화

-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보가 주로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는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고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기간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에게 합리적 조사기간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성급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후에 부지급사유를 발견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환수하기가 쉽지 않음.
 - －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환수하더라도 그 자체가 민원의 사유가 될 소지가 큼.
 - 필요한 조사를 행하면 면책사유를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과 보험금청구자의 불만으로 인해 서둘러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
 - 그렇다고 보험금을 서둘러 지급한다면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이 역시 보험계약의 건전성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궁극적으로 보험금지급기간 3영업일은 보험금청구를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보험사기를 조장할 수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므로 보험금지급기간을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부당한 보험금청구를 심사하는 노력 이외에도 보험

사기를 경감시켜 다수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 국내 보험소비자의 77.0%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험금지급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표 12> 보험금지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의 용인도

질문	답변	
	예	아니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험금 지급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18	185

주 : 803명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한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설문조사에 기반함(2009. 10월, 보험연구원).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기간은 보험상품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손해보험의 특성은 정액과 실손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재물, 상해, 건강 등을 한 증권으로 담보하는 복합형상품이라는 점에서 각 담보위험의 손해사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험사기의 학습효과가능성을 배제하여 건전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 함.
-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45일임.
 - －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하는 사고유무, 면부채 유무 및 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조사하여 보험금지급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음.

<표 13> 보험금지급기간제도의 국제비교

종목	한국	일본	미국(뉴욕)
생명보험	접수후 3영업일 (조사시 10일)	5일 (조사시 120일)	승인후 5일
손해보험 (건강보험)	접수후 3영업일	30일 (조사시 180일)	접수후 45일

2. 장기손해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적발시스템 개선

- 보험금지급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손해보험 및 기타 보험종목의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함.
- 그동안 인명사상과 타인의 재산피해, 이로 인한 가족의 붕괴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적발 노력을 경성사기에 중점을 두어왔음.
- 경성사기 이외에도 보험제도의 근간인 동질위험을 훼손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연성사기 적발을 위한 시스템도 선진화가 필요함.
- 자동차보험사기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손해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감독당국, 수사기관 및 보험업계가 공조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장기보험사기 경감을 위한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함.
- － 장기손해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기손해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이 더 양성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도 활성화되어야 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약 및 사고관련 통계에 기반한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위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발전했으며, 장기손해보험에서도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통계를 활용한 적절한 위험분류를 통해 역선택과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구축에 활용도가 높음.

참고문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12.
- 보험개발원, 『보험사기 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 2007.11.
- 장덕조, “사기적 보험청구-상법 보험편개정안 비판”, 「인권과 정의」 Vol. 386, 2008.
- 福田称夫,古笛恵子, 『逐條解説 改正保険法』, 2008.9.
- 損害保険総合研究所, 『歐美損害保険會社における損害調査實務の現状分析』, pp. 28-29, 2008.9.

저 자 약 력

김 대 환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 dhkim@kiri.or.kr)

이 기 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ihlee@kiri.or.kr)

CEO Report 2010-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발 행 일	2010년 9월 일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26)로 하여 주십시오.